

특 집

'89 낙농육우산업을
결산한다.

낙 농 편

원유채화 문제 해결이 급선무

김 인 식
본회 지도과장

1. 머리말

지나간 낙농업의 한해는 그 어느해보다 많은 문제점만 노출시킨채 해결책 없이 넘어왔다고 본다.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재고의 심각성, 염원했던 낙농진흥법 개정에 있어 이견노출로 이월된 점, 그리고 너무 엄청난 실감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두렵기만 한 Bop 줄임으로 인한 수입개방 결정,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원자재에 관세, 부가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던 정부 공약의 불이행 등 어느 것 하나 뚜렷이 이행됨 없이 지나왔다.

단기에 해결될 수 있던 예년의 문제점과는 달리 향후 낙농업의 흥망을 예고할 수 있는 조짐 또한 없

지 않고 보면 전환기적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농업분야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부가카치 높은 성장산업으로서 국토의 자연적 여건에 적절한 낙농업이 이제 기반 조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책 부재 혹은 여건 부재에서 불안을 예고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처방이 요청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주요 현안별로 점검해 보고 '90년대를 향한 발판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2. 원유 수급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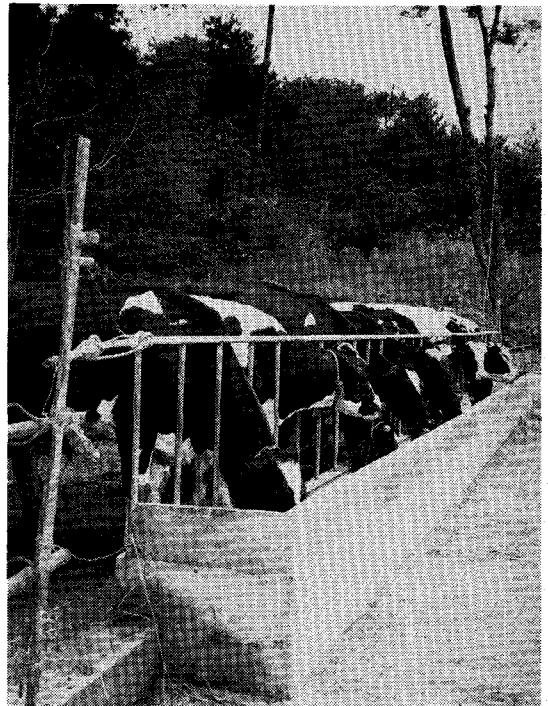
현행 원유가격은 4월 1일부터 13% 인상 조정되었다. 유지율 3.4% 기준 종전 kg당 322원에서 364원으로, 유지율 0.1% 증감시 종전 9,40원에서 10,70원

으로 인상조치된 것이다. 이러한 원유가 인상이 있기까지는 낙농가들의 수많은 노력과 집단적 의사 표시가 이어졌고, '88년 내내 주장된 내용이 연초에까지 지속되다가 결국 3월 15일 농림수산부 발표가 나오면서 가시화 되었다. 낙농가들의 23% 내외 요구에 정부가 불가안정을 이유로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생산비 접근은 가능토록해야 한다는 낙농가들과의 대결 국면이 불가피한 시점까지 분위기가 어려워지자 정부부처간 의견 조정을 거쳐 당초 정부구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 발표되었다. 85년 5월 1일부터 3.4% 유지율 기준 kg당 322원으로 지정된 이래 4년간이나 유보되어오다 각종 물가상승, 농촌 노임상승 등 전반적인 원유가 인상요인이 현저히 나타났으나 낙농가의 요구가 선행 되어야만 조정되는 경직성으로 인해 1년간의 어려운 요구와 노력끝에 그나마 소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문제는 낙농가의 원유가 인상을 기화로 제품 판매가를 25%에서 무려 47%선까지 업체별로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구입 부담에 따른 반발과 불매운동을 유발케 하였다는 점이다. 더우기 이상구 신드롬으로 야기된 우유 기피 현상과 겹쳐 우유 소비부진은 여실히 드러났고 4월을 계기로 분유 재고 누적이 나타나면서 생산량에 부진한 소비 위축 현상은 연말에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자 우리나라 우유소비의 한계성을 논하는가 하면 유업체는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7~8월 전후하여 각 업체별로 kg당 3~5원씩 지불하던 유질개선 냉각비를 중단하였고, 유대지급일을 지연하거나 유대에 분유대체 지불을 하는 등 정상적인 원유거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11월 13일 농림수산부의 안정대책은 전지분유 공장도 가격 3,875원을 낙농가 송아지 사료용으로 2,500원에 공급토록 하고 차액 1,375원은 유업체가 부담키로 한다는 것과 불법 유통되는 수입 유제품을 단속하겠다는 내용, 축

산기금에서 200억원의 유업체 용자지원, 양돈대용유 원료로 분유대체 사용시 kg당 1,500원 지원, 젖소 저능력우 11만 4천두 도태, 젖소 등록을 통한 생산 조절 등이 골자이다. 대체로 농림수산부의 시각은 우리나라 우유소비의 한계를 인정하여 공급과잉으로 보고 생산조절 측면에서의 감량 조절을 통해 안정을 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물론 국민의 우유 소비량 한계성 여부는 좀더 깊은 조사가 토대되어야겠지만 현재의 소비 침체가 제품가 인상 시점에서부터 소비자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제품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심리만 무마된다면 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를 설득할만한 이렇다할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유업체의 책임은 간과한 채 소비부진을 생산축소로 조절하려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한 낙농가의 반발만 거세어질 뿐 정부를 신뢰하고 땀흘릴 수 있는 분위기는 요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3. 낙농진흥법의 미개성

그동안 집유일원화, 원유검사 공영화 혹은 공정화를 위한 주장은 수없이 터져나왔고 이의 실현은 곧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적 근거와 골격을 형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관장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 학계, 소비자 등 이해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고 가칭 낙농위원회의 설치를 결론 지었다.

그러나 낙농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두고 독립법인과 비 독립법인의 주장으로 올해를 그냥 넘기고 낙농진흥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독립법인으로 주장하는 쪽이나 비독립 법인으로 설치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그럴만한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낙농가 내부의 이견대립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것은 소모전만 치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만의 하나라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당한 기간 회의를 거듭하여 제시된 결론을 무시한 채 뒤늦게 기존 조직의 이해 타산에서 비롯한 찬반이라면 낙농업 발전을 위한 순수한 동기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88년 6월에 낙농발전협의회 설치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로 집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농림수산부는 4월 22일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안은 몇 차례 걸친 수정이 있었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법 개정 소위원회와 축협중앙회 소위원회와의 연석회의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견대립이 적은 부분은 대체로 합의 되었으나 낙농위원회의 법적 성격, 즉 상설기구로 표현되는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혹은 비상설 기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그렇게도 고대했던 법 개정이 국회상정 조차 되지 않아 유보될 경우의 우려성

에 대비 가을 정기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상정되도록 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하였을 때의 보완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회법안 상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원유 수급 불균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95년도까지 정부가 잉여원유를 책임처리토록 할 것과 낙농위원회의 위원구성비율에 있어 낙농가의 참여를 60% 이상으로 하여 줄것을 삽입토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결국 낙농진흥법 개정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고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조문검토와 내용보완이 이루어져 국회 통과가 되도록 뜻을 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4. 낙농가의 등록제도

농림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낙농업에 있어 50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등록농가의 경우 젖소두당 조사료 1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급 사료 생산기반을 5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사육통제를 통해 생산조절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총두수 50두는 착유우 30두(60%) 수준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육규모와 농가수를 감안하여 어느정도 통제수준을 가능토록 한 것 같다.

그러나 등록은 영세농가의 전업화 유도도 낙농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존농가의 생산 위축이 조장되지 않는 선에서 대규모 농가의 사육조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특히 낙농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규모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낙농의 특성상 성력화, 기계화에 대비한 장기적 사육목표가 마련되어 근접하는 노력이 뒤따르고 선진 외국의 실례를 통해 등록이하 규모 농가는 등록규모에 근접되는 전업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농가가 등록에 따른 불안 심리가 유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등록규모는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



여 착유우 60두(전체 100두) 규모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축산분뇨처리시설 단속

정부는 날로 오염되어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특히, 대도시 식수로 사용하는 주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여 축산분뇨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간주,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규제되는법규는 2원화 되어 있는데 대규모 농가 즉 우사 1,200㎡ 이상 또는 소 100두 이상은 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고, 중소규모 농가 즉 우사 700㎡~1,200㎡이하 소 60두 이상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 청소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은 대상규모의 틀이상에 해당되어도 단속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목장이 영세한데다 법이 규정하는 축산분뇨 정화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정

부가 의도하는 적정시설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의 전격적인 구속조치 등 대책 마련없는 규제일변도의 단속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이 겹치는 불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국 주요 상수원의 오염원인이 축산분뇨에 의한 것인양 단정하여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생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분뇨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액이 소요되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이를 강요함으로 생업포기 강요와 다름없으므로 필요자금 일부는 정부의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용자조건도 농가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즉 10년거치 20년 상환 연리 4% 정도의 기업체 특혜 금융수준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환경오염 방지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은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실정이다. 양축농민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자금의 현실화는 필연적이라 본다.

아울러 환경청이 제시한 정화시설 기준도 실용성 있게 재검토하고 경제성 등에서도 충분히 보완토록 하여 현실성있는 표준화된 시설이 제시되어야 하고, 영세규모 농가를 위한 집단 공동처리 시설을 정부가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규제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철거 이전목장을 낙농지대로 유도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칫 축산 분뇨를 공업폐기물과 똑같이 취급하거나 농어촌의 생활하수는 방치하면서 축산농가만 시설 설치를 규제하여 형평을 결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만 농가의 불신을 사지 않을 것이다.

6. 수입개방 결정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 국제수

지(BOP)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BOP 줄임을 확정시켰다. 즉 향후 8년 이내에 단계적인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을 추진하되 97년 6월말까지는 수입제한 품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거나 그 수입제한을 GATT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은 수입자유화 선언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에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과동으로 각 작목마다 불황이 거듭되고 농민의 도시 빈민화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니 수입자유화 됐을 때에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낙농업의 국제적인 현실을 주시할 때 국가가 유제품 수출입에 방입하거나 수입자유화 시책으로 내맡기는 예는 낙농선진국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설령 낙농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반이 수입자유화 해도 이겨낼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해도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은 각별하다.

국민 모두의 뿌리요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과연

무방비 상태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시책으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너무도 급박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은 정부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일대 개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완제품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이 기정사실화 된 이상 농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농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제시됨으로써 공산품 수출로 야기된 농민의 피해의식이 더이상 분출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배분의 모순과 부당성을 울분으로 거리에서 외치지 않게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8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주최로 열린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는 경찰과 행정의 원천봉쇄로만 대응하여 무사고였음을 안도하기 이전에 농민의 거센 함성이 언제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막상식

새로운 형태의 유방염연고 튜브를 사용하여 유방염 감염율을 감소시켰다.

새로운 형태의 유방염연고 튜브는 그 마개를 비틀어서 제거시키며 바늘 부분이 유두관으로 3.5mm정도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루이지애나의 5개 목장에서 신형 유방염 연고 튜브와 종래부터 사용해오던 튜브를 가지고 전유우에 주입한 결과 신형의 경우 13두, 구형의 경우 23두가 유방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의 연고제 주입방법은 유두 깊숙히 넣고 주입하는데 비해 신형은 유두의 끝부분에 3.5mm를 넣고 주입한 다음 유두를 위로 훑어 주면 된다.

250두에 대한 또다른 시험에서는 신형의 경우 37두, 구형의 경우 46두의 젖소가 유방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형튜브는 단순한 기구일뿐 아니라 낙농가들의 선호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신형튜브 사용시에도 주입 전유우 소독은 철저히 해야한다.

-Hoard's Dairyman, Vol, 134, No, 13-